

1.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- 동 조례는 지역경제력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의조성과 용지분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
- 근거법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시 기존의 “공업단지”란 용어가 “산업단지”로 바뀌게되어 동 조례의 용어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통일시키고자 함.
-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부도, 경영상의 애로 등으로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면적의 30%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위약금을 물리지 않도록 하는 개정법령에 맞게 조문을 추가하고
- 분양대금을 납기내 납입치 못할 경우에는 현행 18%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을 경감하여 시중은행의 1년간 정기에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부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검토내용

- '95. 12. 29. 및 '98. 5. 25. 각각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“공단” “공업단지” 또는 “공업용지” 등을 “산업단지”로 바꾸고 조세감면 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법령과 부합되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이고

- 그동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근거하여 부과하던 분양 위약금에 관하여도 개정조례 제19조 3항에 신설함으로써 그 근거를 마련하였고
특히 동 조항에서는 분양면적의 30%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위약금을 물리지 않도록 하여 규제완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사료되며
- 분양대금의 납입 연체이자율도 동 법령에 근거하여 제20조 2항을 신설하여 현행 18%에서 8%수준인 시중은행 금리를 적용토록하여 경감하는 등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는 조치로 판단되며 근거 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된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- 아울러 부칙에 위약금의 지불에 관한 적용예와 연체료의 지불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동 조례의 적용시점과 대상을 분명히 한 것 또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.